

	객원교원인사규정	규정번호	3-3-3
		제정일자	2019.08.01.
		개정일자	2020.03.01.
		개정차수	1차
		소관부서	교무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이하“대학”이라 한다) 객원교원의 자격, 임용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객원교원이라 함은 국내의 타 대학 또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 전임의 직으로 재직 중인 인사로서 특수한 전공영역에 전문적 경험 및 연구를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

제3조(자격)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 및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타 대학의 전임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
2. 정부 또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정규직으로 재직 중인 자
3. 기타 총장이 객원교원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

제4조(신규임용 직명) 객원교원의 신규임용 직위는 객원조교수로 한다.

제5조(임용절차) ① 객원교원의 임용은 학과장(학부장) 또는 관련 부서장의 추천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② 임용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학과장(학부장) 또는 부서장 추천서[서식1] 1부
2. 최종 학위증명서 각 1부
3. 경력증명서 각 1부
4. 자격증 사본(해당자) 각 1부

③ 객원교원으로 임용되었던 자를 재임용할 경우에는 제2항의 제1호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학력이나 경력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임용기간) ① 객원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객원교원은 임용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해임할 수 있다.

1. 담당할 강좌가 합강 또는 폐강된 경우
2. 정상 강의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교수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제7조(교수시간) 객원교원의 교수시간은 매주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주 9시간까지 가능하다.

제8조(강사료) 객원교원의 강사료는 강사료지급규정에 따른다.

제9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 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